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3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안태준·조인철·이기헌

소병훈 • 서영석 • 정준호

이병진 · 허 영 · 이연희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 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로, "조에서"를 "조, 제54조 및 제67조에서"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발주청"을 "시·도지사, 발주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한 다.

제54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을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주청(발주자"를 "시·도지사, 발주청(발주자"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건설공사 등의 현장점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를 "장은 건설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필요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 전관리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
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정) ①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u>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u> 지사,</u>
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u>조에서</u> 같다)과 인·	<u>조, 제54</u> 조 및 제67조에
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	
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	
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	
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	
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	
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	
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혀해과 간은)

- ② (생 략)
- ③ <u>발주청</u>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 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 개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③ <u>시·도지사, 발주청</u>
<u>.</u>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u>국토교통부장관</u> , 시·도지
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u>장</u>
•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u>발주청(발주자</u>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 · 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 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②
	<u>시·도지사, 발주청 및</u>
	인·허가기관의 장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③ 시・도지사, 발수청(발수자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옥 회	검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

사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 · 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 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 다.

<신 설>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을 점검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점 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③ 국토교통부장	<u>관, 시·도지사</u>
	장은 건설사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행하게 할

- ④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u>발주청</u> 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 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u>필요한</u>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 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 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수 있다.</u>
⑤ 제3항 및 제4항
<u>시·도</u>
지사,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국토안전관리원
<u>⑥</u>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
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
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 경우에는</u>
<u>.</u>
<u>⑦</u>
제3항에
~~~~ 따른 건설사고 및 제6항에 따른